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67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오세희·허종식·김성환

김 윤 • 조인철 • 주철현

정동영 · 권향엽 · 박수현

김태선 • 박희승 • 허성무

박민규 · 송재봉 · 서영교

황정아 • 박지혜 • 박지원

박선원 • 채현일 • 장종태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 활성화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 급증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유통건수는 235건, 부정유통액은 539억원으로 집계 됐으며 이중 92%가 지류형 상품권 유통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며,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에 효과적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7제2항 신설 및 제72조 등).

법률 제 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판매·환전 등 운 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2조 중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 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 2.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 3.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제74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7(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 (생 략)	제26조의7(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신 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 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 •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2조(벌칙) <u>제44조를 위반하여</u> <u>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u> <u>아니한</u>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u>
<신 설>	1.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 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 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신 설>

<신 설>

-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74조(과태료) <삭 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 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 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 2.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 점
 - ②·③ (생 략)

- 2.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 점
- 3.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 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② · ③ (현행과 같음)